

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각종 위원회  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2월 27일

여 수 시 장

김기영



여수시 조례 제2278호

붙임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##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.

제4조(중전의 제5조)의 제목 “(적용범위)”를 “(적용 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”를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관장하는”을 “맡아 처리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) ① 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

위해 개별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

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, 청년은 「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」

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

청년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「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

2. 「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 등과  
관련된 위원회

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위원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
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, 제8조 및  
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·비속이 해당  
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 
경우

4.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,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 
사항

5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 
관여하였던 경우

6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 
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 
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

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③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의 연임 제한 및 제3항의 중복 위촉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시 공무원 또는 여수시의회 의원
2. 특수전문분야 전문가
3. 여성위원
4.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·심의·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

제11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1조)제2항 중 “위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

법률」 제9조제1항”을 “위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14조(종전의 제12조)제4항 중 “제5조제1항제2호”를 “제4조제1항제2호”로, “통·폐합여부”를 “통·폐합 여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원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당해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 공무원, 여수 시의회 의원, 특수전문분야 전문가,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·심의·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.

<신설>

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--.

<삭제>

⑤ -----  
----- 없으면 -----  
-----.

제6조의2(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) ①

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 개별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, 청년은

<신 설>

「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「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

2. 「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

3. 그 밖에 시장이 청년위원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·비속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

한 경우

4.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,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

5.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
6.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9조(위원의 임기 등)

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

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③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의 연임 제한 및 제3항의 중복 위촉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시 공무원 또는 여수시의회의원
2. 특수전문분야 전문가
3. 여성위원
4.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·심의·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

제8조 (생략)

제9조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·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해당 용역·공사 등의 대상 및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 (현행 제8조와 같음)

제11조 ----- 해당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.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 (생략)

제11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회 관리 및 정비) ① ~ ③ (생략)

④ 제3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,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·폐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3조·제14조 (생략)

제12조(위원회의 운영 등) (현행 제10조와 같음)

제13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①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② 위원장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-----  
----- 없으면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위원회 관리 및 정비) ① ~ ③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4조제1항제2호 -----  
----- 통·폐합 여부 -----  
-----.

제15조·제16조 (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)